

2025 SPA 형법 전면개정판 정오표

〈총론 I 권〉

p.224 문제 10번 해설 ㉔ 일부 교체

㉔ × : ~ (2줄) 못하였다면,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(∵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미수처벌규정이 없음).

p.304 문제 12번 해설 ④ 일부 추가 교체

④ × : ~ (3줄) 행위이므로,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(대판 2000. 7.4, 99도434 ▶ 주의 : 경찰관의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(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)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,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).

p.306 박스 “이론적 배경” 일부 추가 · 수정

이론적 배경	〈고전학파(구파)〉	〈근대학파(신파)〉
	• 객관주의(범죄론) • 응보주의, <u>일반예방주의</u> (형벌론)	• 주관주의(범죄론) • <u>특별예방주의</u> (형벌론)

p.312 중간 “② 가벌성의 근거” ㉠ 괄호 수정

㉠ 원인설정행위에 가벌성(책임)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(구성요건모델설, 일치설)

p.320 문제 9번 해설 ① 괄호 추가

① × : ~ 착수시기를 원인행위시로 본다는 견해(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살해행위로 본다는 견해 ×)는 책임 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 원칙을 고수한다는 장점이 있다.

〈총론 II 권〉

p.15 관련판례 10번 아래 11. 추가

11.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,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, 무면허수입예비죄에 해당한다(대판 1990.6.8, 90도707). 24. **해경승진**

p.75 확인학습 9번 수정

9 판례는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교사자의 교사행위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에서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됨을 그 전제요건으로 하지 않는 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. () 16. 9급 검찰·마약수사·법원행시, 18. 경찰승진, 21. 7급 검찰, 22. 해경간부

p.215 문제 15번 해설 ㉔ 교체

㉔ × : ~ (2줄)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,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(대판 2012.9.27, 2012도9295).

〈각론 II 권〉

p.124 문제 15번 해설 ㉔ 수정

㉔ ○ : 대판 2009.4.23, 2008도11921(∵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‘파괴’란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·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,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.)